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거주자 확인 안내자료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G20, OECD 등에서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필요성을 인식 하여 마련된 것으로, MCAA에 참여하는 국가의 과세(세무)당국은 금융회사로부터 계약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전년말 기준)를 수집하여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상대국의 과세(세무)당국과 상호 교환하게 됩니다.

*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2017년 한국을 포함한 49개 국가가 최초로 정보교환을 시작한 이후, 2018년 중국을 포함한 52개 국가가 추가로 교환을 시작했으며, '18.11월 현재까지 150개 국가(확약국 기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교환국가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홍콩은 2019년 최초 교환 예정)

* 협정

확약국:

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ommitment-and-monitoring-process/AEOI-commitments.pdf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1차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거주자 관련 본인확인서 수취, 전산·문서기록 검토 등을 통한 실사를 거쳐 금융정보 교환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크게 계좌 보유자 정보(성명, 주소, 거주지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등)와 계좌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 총액, 해당 계좌 관련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 계좌의 경우 해지 사실)로 구분되며, 중국의 경우 계좌의 유형에 따라 계약상대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유형별 교환 시기 >

구 분		교환 시기
17.7.1. 이후 개설 계좌(개인, 법인 동일) * 동일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했던 경우는 제외		2018년부터
개인 계좌	17.6.30. 현재 계좌 총잔액 100만 달러 이하	2019년부터
	17.6.30. 현재 계좌 총잔액 100만 달러 초과	2018년부터
법인 계좌	17.6.30. 현재 및 보고대상 연도말 계좌 총잔액 25만 달러 이하	교환대상 아님
	17.6.30. 현재 계좌 총잔액 25만 달러 초과	2019년부터

2. <조세목적상 거주자> 개념

MCAA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경우, 2018년부터 (중국 규정에 따른 조세목적상)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정보(한국에서 중국으로)가 (한국 규정에 따른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정보(중국에서 한국으로)와 교환됩니다.

조세목적상(세법상) 거주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적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또는 법인)이 어느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조세 관할권)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국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이밖에도 거주자 판단 기준은 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자 판단을 위해 여러 측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국 본토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중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1회 30일 또는 합산하여 90일 이하 임시 출국한 일수는 차감하지 않음)한 개인이 거주자이며,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 연속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5년 기간 중 1회 30일 이상 또는 기간 중 1년 내에 합산하여 90일 이상 출국한 경우는 제외) 6년째 해부터 중국 국내외의 모든 소득을 중국에 신고하고 세

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자 판단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안(2019.1.1. 실시)의 거주자 요건 등 개정 : ① 중국 본토 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중국 본토에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 거주자 ② 상기 5년 이상 거주 제외요건 중 ‘합산하여 90일 이상 출국한 경우’는 삭제

3.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거주자 확인> 중국 규정

중국에서는 2017년 5월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등이 합동으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실사관리 방법(총 7장 44조,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MCAA에 따른 2018년의 첫번째 정보교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 URL :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23078/content.html>

“방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전세계 공통사항에 해당하며, 그 내용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실사관리 방법> 중 일부 발췌

(제10조) …… 계좌 보유자가 중국 거주자와 기타 국가(지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계좌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 추정정보란 금융기관이 기존의 개인 계좌 보유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검색 및 판단하는 관련 요소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호를 포함한다.

(1) 계좌 보유자의 외국 신분증명서 ……

(제20조) 금융기관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래 각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존의 개인소액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해야 한다. ……

(2)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기록을 검색하여, 계좌에 비거주자 추정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

(제23조) 비거주자 추정정보가 있는 기존 개인계좌를 발견한 경우, 금융기관은 기존의 고객자료를 통해 계좌보유자가 비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한다. 확인할 수 없다면 성명문서 제출을 계좌보유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중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성명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비거주자임을 성명하는 경우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한다. 계좌보유자가 제출이 요구된 날부터 90일 내에 성명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해야 한다. ……

한편 “방법”의 규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2017년 12월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비거주자 금융 계좌정보 실사에 대한 세부규칙(총 7장 43조)>을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URL :

<http://www.pbc.gov.cn/zhengwugongkai/127924/128038/128109/3452296/index.html>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에 대한 세부규칙> 중 일부 발췌

(제15조) “방법” 제18조의 증명자료는 중국 정부 부처에서 발급한 다음의 유효한 증명자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1) 세무 부문에서 발급한 중국거주자 신분증명(中國稅收居民身分證明)
- (2)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
- (3)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 (4) 여권에 기재된 출입국 기록 등 중국 경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증명자료
- (5) 기타 유효한 증명자료

(제22조) …… 계좌보유자가 제출이 요구된 날부터 90일 내에 성명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적 등의 정보를 감안하여 그 거주지 관할권을 확정한다. 당초 비거주자 계좌에 해당했던 계좌는 국적과 당초 제출한 성명문서 등의 정보를 감안하여 그 거주지 관할권을 확정한다.

4. <거주자 확인> 관련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

- 1) 거주자신분 성명문서(個人稅收居民身分聲明文件, “방법” 첨부서식 기준)

계좌보유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권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실제로 제공하는 서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명과 거주지 관할권(① 중국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중국 거주자인 동시에 기타 관할권의 거주자)을 선택하고, 이후 ① 이외의 경

우 현 거주지 및 출생지, 거주지 관할권의 납세자 번호(없는 경우 그 이유)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중국거주자 신분증명

납세자 개인이 조세목적상 중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① 신청서 ② 중국 내 거주기간 증명자료(통상 출입국 기록으로 판정) ③ 신청년도의 소득세 납부 증명서(12개월 전부 필요)를 구비하고 관할 세무 관서를 방문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MCAA 분야>

1.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기관은?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유사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 조약 이행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포함되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족 명의의 계좌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 계좌 잔액 합산은 인별 합산이 원칙이므로 가족 명의 계좌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족과 공동으로 보유한 계좌일 경우 각 계좌 보유자가 단독으로 계좌 잔액 전액에 대한 인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전체 잔액 또는 가액이 각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될 수 있는지?

- 보고 대상인지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 정보가 한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4.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금융정보도 머지않아 교환되는지?

- 우리나라와 개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여도 다자간 조세 행정공조협약 및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정보교환이 가능합니다.
- '18.11월 기준 전세계 150개 국가/관할권이 CRS MCAA 협약국으로 참여 중이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CRS 비협조 국가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교환 대상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5. 교환된 계좌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 각 국가의 과세당국은 교환된 금융정보를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 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재산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기타 분야>

6. 계좌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 계좌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라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18년 보유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에 신고

- 추가로 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도 검토)

7.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지만 국외송금이 어려워 현지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 현지 계좌 보유 사실 만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소득 및 계좌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 미화 100만 달러가 교환기준이라고 하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 계좌잔액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이 바뀐 것 아닌지?

- 미화 100만 달러는 개인 소액계좌와 고액계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둘은 심사절차에만 차이가 있을 뿐 개인계좌는 금액과 무관히 모두 교환 대상입니다.
- 참고로 계좌잔액 10억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며 '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18년 보유분(2019년 신고분)부터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기준금액이 인하되었습니다.

9. 금융계좌를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선처되는 부분이 있는지?

- '15.10.1~'16.3.31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 하고 형사 관용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자진신고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 다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같은 자진신고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을수록 관련 미신고 소득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니 조기에 성실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교환되지 않는 것인지?

-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계좌, 수탁계좌 등 금융정보가 교환 대상입니다.

[출처: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